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기체류·체류기간 연장허가 사유에 피부양 목적 추가〉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48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및 입법취지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17.
3. 회 부 일 : 2024. 10.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명으로 불과 1년전에 비해 약 11%가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이제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변화이며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맞아 향후 이민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결혼이민자가 부모 등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경우 자녀의 양육 지원 또는 자녀가 중증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된 횟수 아래 총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민법」 제974조상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한국에서 부양하기 위한 장기체류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받을 수 없어 아픈 부모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임. 이

에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피부양’ 목적으로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5조의6).

주요내용

가. 제10조의2제1항제2호 장기체류자격의 목적 규정에 “피부양”을 추가함.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제25조의6을 신설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피부양자가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입법취지

개정안은 ① 입국하는 외국인의 90일 초과 장기체류자격에 피부양 목적을 추가하고, ②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피부양자가 피부양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5조의6 신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¹⁾와 저출생·고령화의 해법으로 적극적인 다문화·이민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본국의 피부양자가 국내에서 보다 오랜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 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
1. (생략)	-----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u>결혼</u> 등의 목적으로	-----
	1. (현행과 같음)
	2. -----
	----- <u>결혼, 피</u>

1) 2023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7,584명이며,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4.89%로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21) 3.79% → ('22)4.37% → ('23) 4.89%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부양 등의----- -----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6(피부양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974조제1호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부양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피부양” 목적의 장기체류자격 추가(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함. 일반체류자격은 ①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②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되며,²⁾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음.

[장기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³⁾]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	재임기간	구직(D-10)	1년
공무(A-2)	공무수행기간	교수(E-1)	5년
협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회화지도(E-2)	2년
		연구(E-3)	5년
문화예술(D-1)	2년	기술지도(E-4)	5년
유학(D-2)	2년	전문직업(E-5)	5년
기술연수(D-3)	2년	예술흥행(E-6)	2년
일반연수(D-4)	2년	특정활동(E-7)	3년
		계절근로(E-8)	8개월
취재(D-5)	2년	비전문취업(E-9)	3년
종교(D-6)	2년	선원취업(E-10)	3년
주재(D-7)	3년	방문동거(F-1)	2년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투자(D-8)	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거주(F-2)	5년
		동반(F-3)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재외동포(F-4)	3년
	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결혼이민(F-6)	3년
		기타(G-1)	1년
		관광취업(H-1)	협정 상의 체류기간
무역경영(D-9)	2년	방문취업(H-2)	3년

주) 위 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

개정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는 국내 장기체류자격의 목적에 “피부양”을 추가하려는 것이나, 현행 시행령상 방문동거(F-1) 사증의 체류자격에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⁴⁾ 이미 피부양 목적의 장기체류가 법령상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3. 방문동거 (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24.>

	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2) 피부양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칙(안 제25조의6 신설)

현행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⁵⁾ 또한 제25조의2제1항은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범죄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나 일반 외국인 등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칙을 두고 있고, 제25조의5제1항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이 제한된 경우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가목

5)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974조제1호의 피부양자⁶⁾가 피부양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특칙을 두려는 것인바, 현행법상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칙은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또는 전시·사변 등으로 출국이 제한되는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를 감안할 때, 피부양 목적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칙의 입법에 있어서는 다른 특칙 사유와의 균형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되는바,⁷⁾ 개정안에 따라 귀

6)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 3. 22., 2019. 1. 15.>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피부양자를 국내에 장기간 체류시킬 수 있도록 할 경우 의료 및 복지 분야의 사회적 비용이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7